

세법연구 06-07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2006. 11

전병목 · 이승식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 | |
|-----------------------|----|
| I. 서론 | 7 |
| II.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관 | 8 |
| III. 미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 10 |
| 1. 미국의 소득세 제도 개관 | 10 |
| 2. 이자소득 | 11 |
| 3. 배당소득 | 12 |
| 4. 자본이득 | 13 |
| 5. 증권거래세 | 19 |
| IV. 영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 20 |
| 1. 영국의 소득세 제도 개관 | 20 |
| 2. 이자소득 | 23 |
| 3. 배당소득 | 23 |
| 4. 자본이득 | 25 |
| 5. 증권거래세 | 27 |
| V. 독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 28 |
| 1. 독일의 소득세 제도 개관 | 28 |
| 2. 이자소득 | 30 |
| 3. 배당소득 | 30 |
| 4. 자본이득 | 32 |
| 5. 증권거래세 | 33 |

| | |
|----------------------------------|----|
| VI. 일본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 34 |
| 1. 일본의 소득세 제도 개관 | 34 |
| 2. 이자소득 | 37 |
| 3. 배당소득 | 38 |
| 4. 자본이득(주식 양도차익) | 41 |
| VII. 핀란드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 42 |
| 1. 핀란드의 소득세 제도 개관 | 42 |
| 2.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 44 |
| VIII. 요약 및 결론 | 48 |
| 참고문헌 | 50 |

표목차

| | |
|--|----|
| 〈표 II-1〉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 9 |
| 〈표 III-1〉 미국의 소득세율(2006년도) | 11 |
| 〈표 III-2〉 미국의 법인세율(2006년도) | 13 |
| 〈표 III-3〉 자본이득 및 적용세율 | 16 |
| 〈표 IV-1〉 영국의 구분과세 제도(Schedular system) | 20 |
| 〈표 IV-2〉 영국의 소득세율(2005/2006) | 21 |
| 〈표 IV-3〉 과세소득 및 적용세율 | 22 |
| 〈표 IV-4〉 비사업용 자산 | 27 |
| 〈표 IV-5〉 사업용 자산 | 27 |
| 〈표 V-1〉 독일의 소득세율(single taxpayers, 2005) | 29 |
| 〈표 V-2〉 독일의 소득세율(jointly assessed spouses, 2005) | 29 |
| 〈표 VI-1〉 일본의 배당소득제도 | 39 |
| 〈표 VI-2〉 일본의 배당공제제도 | 40 |
| 〈표 VI-3〉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 41 |
| 〈표 VII-1〉 근로소득세율(2005) | 42 |
| 〈표 VII-2〉 배당과세 - 사례 1 | 45 |
| 〈표 VII-3〉 배당과세 - 사례 2 | 46 |

그림목차

| | |
|----------------|----|
| [그림 VI-1] 과세방법 | 36 |
|----------------|----|

I. 서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제가 추구하는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고려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국가적 관점을 나타낸다. 납세자의 납세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형평성 측면이 중요할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 즉 노동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금융소득 자체가 갖는 높은 국가간 이동성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고려요인일 경우에는 누진과세되는 종합과세제도보다는 저율분리과세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금융소득 과세방식의 선택은 각 국가가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도 관계가 깊다. 미국과 같이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자본의 이동에 따른 고려보다는 세부담 형평성에 중점을 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본의 유입매력이 떨어진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같은 경우, 자본소득을 노동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자본소득과세를 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혹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해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분포의 불균형이 심한 자산 등 자본관련 소득에 있어 과세 형평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소득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의 금융소득 관련 과세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결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본소득 과세제도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외국사례 분석을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관

주요국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가 과세의 기본 틀을 납세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소득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종합과세로 하고 있으나, 자본의 이동성, 징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분적인 분리과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부분적 분리과세제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득발생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즉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간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

또한 종합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2005년 개인기준 1,370유로(부부합산과세의 경우 2배)의 공제를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정의하는 Category 5 소득에서 공제토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2005년 개인기준 1,220유로의 소득공제와 115유로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자본의 높은 국가간 이동성, 개별 국가의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포기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이동성이 낮은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자본소득은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과세제도(Dual Income Taxation: DIT)를 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이 북구의 소규모 국가들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편의성을 위해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이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각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1) 벨기에의 경우 이자소득 뿐만아니라 배당소득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고 있다. 대표적인 자본소득인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비하여 실효세 부담률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국가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경우로 프랑스를 들 수 있다. 또한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멕시코, 폴란드, 그리스와 같은 소국경제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차익만 신고 분리과세하는 나라로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을 들 수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 차이를 두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본, 프랑스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소액주주의 상장·등록주식 처분의 경우에 비과세하며 대주주 혹은 비상장·미등록주식의 처분에는 과세하고 있다. 과세방식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세율은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여부에 따라 차등과세되고 있다.

〈표 II-1〉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주식양도차익 |
|-------------------|---|---|---------------------------------|
| 미 국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종합과세 (1년 이상 보유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
| 영 국 ¹⁾ | 혼합과세(원천징수) | 혼합과세 | 분리과세(£8,500 초과분) |
| 일 본 | 일률원천분리과세 | 종합과세 (소액주주는 분리과세 가능) | 분리과세(원천징수) |
| 독 일 | 종합과세(원천징수) | 종합과세(원천징수) | 비과세 (1년 이내 보유의 경우 과세) |
| 프랑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종합과세 | 분리과세 (거래액 15,000유로 이상 경우) |
| 핀란드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 한 국 | 분리과세(원천징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원천징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소액주주) |

주: 1) 영국의 경우에는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순으로 합산한 다음 각 소득이 속한 세율구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소득은 합산하되, 세율만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Ⅲ. 미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미국의 소득세 제도 개관

가. 총소득(Gross Income)의 개념

미국 내국세법상 총소득은 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으로서 그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미국 내국세입법 제61조는 사용료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재산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자, 임대료, 로열티, 배당, 위자료와 별거시 생활비, 연부금, 생명보험과 기부금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양로연금, 채무면제익, 파트너십 총소득의 배당, 고인에 대한 소득, 유산과 신탁기금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을 규정하는 있는데, 이는 예시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개인소득세 계산과정

소득(Income)

△ 총소득 제외항목(Exclusions from gross income)

총소득(GI : gross income)

△ 조정총소득전공제(Deductions for AGI)

조정총소득(AGI : Adjusted Gross Income)

△ 조정총소득후공제(Deductions from AGI)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 인적공제 등(Exemptions)

과세소득(TI : Taxable Income)

× 적용세율(tax rate)

소득세액(Income Tax)

△ 세액공제, 예정납세 등

지불세액 또는 환급세액(Tax Payment or Refund)

다. 개인소득세율

개인소득세율은 10%, 15%, 25%, 28%, 33%, 35%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 여부(독신자와 기혼자), 기혼자의 합산신고 여부(합산신고와 개별신고), 세대주, 생존배우자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체계가 적용된다.

〈표 Ⅲ-1〉 미국의 소득세율(2006년도)

| 세율(%) | 과세소득범위(US 달러) | | | |
|-------|---------------|------------|------------|------------|
| | 독신 | 기혼(합동신고) | 기혼(별도신고) | 세대주(가장) |
| 10 | 0 ~ 11,050 | 0 ~ 14,000 | 0 ~ 9,225 | 0 ~ 10,000 |
| 15 | ~ 22,100 | ~ 36,900 | 0 ~ 18,450 | ~ 29,600 |
| 25 | ~ 53,500 | ~ 89,150 | ~ 44,575 | ~ 76,400 |
| 28 | ~ 115,000 | ~ 140,000 | ~ 70,000 | ~ 127,500 |
| 33 | ~ 250,000 | ~ 250,000 | ~ 125,000 | ~ 250,000 |
| 35 | 250,000 ~ | 250,000 ~ | 125,000 ~ | 250,000 ~ |

자료: 미국 IRS 제1조 참조

2.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다만 예금주가 납세자 번호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세율 20%로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10%, 15%, 25%, 28%, 33%, 35%의 6단계)로 과세하며, 결혼 여부(독신자와 기혼자), 기혼자의 합산신고 여부(합산신고와 개별신고), 세대주, 생존배우자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체계가 적용된다.

나. 비과세

이자소득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소액 또는 공익목적 채권의 이자는 비과세된다.

3.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 개인이 배당을 받은 경우

개인의 수입배당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납세자번호를 통지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는 31%의 back-up withholding tax(보완원천세 또는 특수원천세)가 과세된다.

개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가 없다.

2) 법인이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는 법인주주의 소유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의 70%를 소득공제하고, 그 소유 지분율이 2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액의 80%를 소득공제한다. 그리고 같은 계열그룹(affiliated group)

안에 있는 배당법인으로부터 배당(qualified dividend)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의 100%를 소득공제한다. 여기서 계열그룹이란 미국 연결납세제도상의 계열그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80% 이상의 지분 소유관계로 연결된 미국내의 법인 집단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당결정일 60일 전부터 시작되는 121일 기간 동안 배당을 받는 법인주주가 당해 주식을 61일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표 III-2〉 미국의 법인세율(2006년도)

| 세율(%) | 과세소득범위(US 달러) | 비 고 |
|-------|---------------------|---|
| 15 | 50,000 미만 | |
| 25 | 50,000 ~ 75,000 | |
| 34 | 75,000 ~ 10,000,000 | 과세소득이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5% 또는 \$11,750 중 적은 것을 추가 |
| 35 | 100,000,000 초과 | 과세소득이 15,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3% 또는 \$100,000 중 적은 것을 추가 |

자료: IRS 제11조 (b) 참조

4. 자본이득

가.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 구분

개인의 경우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판매나 교환으로부터 생긴 자본이득 중 단기순자본이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소득세율로 과세하지만, 장기순자본이득은 자본이득의 유형에 따라 우대세율(세율 28%, 25%, 15% 또는 5%)이 적용된다. 장기자본이득은 28% rate gain,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및 adjusted net capital gain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것에서 장기자본손실을 차감하면 장기순자본이득이 되고, 이들에 대하여는 각각 28%, 25%, 15%(소득구간이

15%에 속하면 5%)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나. 용어의 정의

① 단기순자본이익(net short-term capital gain)은 단기자본이익(short-term capital gain)에서 단기자본손실(short-term capital loss)을 차감한 것을, ② 단기순자본손실(net short-term capital loss)은 단기자본손실(short-term capital loss)에서 단기자본이익(short-term capital gain)을 차감한 것을 각각 말한다. ③ 장기순자본이익(net long-term capital gain)은 장기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에서 장기자본손실(long-term capital loss)을 차감한 것을, ④ 장기순자본손실(net long-term capital loss)은 장기자본손실(long-term capital loss)에서 장기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⑤ 순자본이익(net capital gain)은 장기순자본이익(net long-term capital gain)에서 단기순자본손실(net short-term capital loss)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다. 28% rate gain

28% rate gain은 ① 수집품 이익(collectible gain, 예를 들어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인 모피, 골동품, 금속, 보석, 우표와 동전, 예술품 기타 다른 수집품의 판매나 교환으로부터 생긴 이익)과 ② section 1202 gain(원칙적으로 1202조에서 서술된 특정주식의 판매나 교환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50%)의 합계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장기자본이익은 개인납세자가 28%보다 더 높은 소득구간(bracket)에 속할 경우에만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인납세자가 15% 소득구간(bracket)에 속할 경우에는 28% rate gain은 개인납세자의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같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라.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 25% rate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은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예: 빌딩)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허용되기 때문에 발생한 장기자본이득이다.

예를 들어 갑이 35% 소득구간(bracket)에 속하고, 상업빌딩을 \$100,000에 매도하였다. 갑은 10년 전에 위 빌딩을 \$1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갑이 자신의 사업용으로 빌딩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 직선법에 의하여 \$25,000의 총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었다. 갑은 판매시점에 빌딩에 대한 조정된 투자기준액(adjusted basis)이 \$75,000이었다. 갑이 그 해 동안 자산을 처분한 것은 빌딩판매뿐이었다고 가정하자.

위의 경우에 갑의 빌딩판매로 인하여 실현된 이득은 \$25,000이다. 갑이 이득을 실현한 것은 \$25,000의 감가상각이 투자기준액(basis)에 반영되어 투자기준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기준액의 조정이 결국 재산의 판매로 얻은 \$25,000의 이득이 되는 것이고,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에는 최고세율 25%가 적용된다.

마. adjusted net capital gain : 15% and 5% rate

순자본이득(net capital)에서 28% rate gain과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을 차감하면 adjusted net capital gain이 된다. adjusted net capital gain에는 최고세율 15%가 적용된다. adjusted net capital gain은 개인 납세자가 15% 소득구간(bracket)에 속할 경우에는 최대세율 5%가 적용된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판매는 adjusted net capital gain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거래가 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은 부부로서 합동신고를 하고, 35% 소득구간(bracket)에 속한다. 과세소득은 \$66,000이고, 이 중 \$36,000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이고, \$30,000은 1년 이상 소유한 특정주식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장기자본이득이다. 편의상 처음 과세소득 \$40,000은 15%, 과세소득 \$40,000에서 \$100,000까지는 28%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순자본이익은 \$30,000이고, adjusted net capital gain도 \$30,000이 된다(28% rate gain과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15% 세율구간이 \$40,000이므로 일반소득 \$36,000은 15%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15% 세율구간에서는 순자본이익이 \$4,000이 되는데 이것은 adjusted net capital gain을 구성하므로 15% 대신에 5%가 적용된다. 나머지 순자본이익 \$26,000도 adjusted net capital gain을 구성하며, 세율은 28% 대신 15%가 적용된다.

〈표 III-3〉 자본이익 및 적용세율

| 소득구간 | 과세소득 | 소득종류 | 적용세율 |
|---------------------------|--------|---------------------------|------|
| 28%구간 (40,000~100,000) | 26,000 | adjusted net capital gain | 15% |
| | 4,000 | adjusted net capital gain | 5% |
| 15%구간 (0~40,000) | 36,000 | ordinary income | 15% |

바. 자본손실(capital loss)의 할당

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먼저 자본이익(capital gain)에서 차감하게 되는데, 단기 자본손실과 장기자본손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자본손실은 단기자본이익에서 차감하고, 단기순자본손실이 발생하면 장기자본이익인 28% rate gain,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adjusted net capital gain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장기자본손실은 먼저 같은 유형의 장기자본이익에서 차감한다. 만약에 28% rate gain 유형에서의 순손실은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에서 차감한 후 adjusted net capital gain 유형에서 차감한다. 만약에 adjusted net capital gain 유형에서의 순손실은 28% rate gain에서 차감한 후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에서 차감한다. 이와 같이 자본손실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익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므로 개인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납세자가 35% 소득구간(bracket)에 속하고, 장기자본이득이 \$15,000이고, 이 중 주식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장기자본이득은 \$9,000, 골동품의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은 \$6,000이다. 그리고 단기순자본손실은 \$5,000이다.

이 경우에 순자본이득은 \$10,000(\$15,000-\$5,000)이 된다. 단기순자본손실 \$5,000은 28% rate gain에 해당하는 골동품의 판매로 인한 장기자본이득 \$6,000에서 차감하게 된다. 따라서 28% rate gain은 \$1,000(\$6,000-\$5,000)이 되고, 주식의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 \$9,000이 adjusted net capital gain이 되므로 15%가 적용된다.

사. 자본손실의 공제한도

자본이득에 할당되고 남은 손실은 일반소득에서 공제(상계)하게 된다. 즉 자본이득에 할당되고 남은 손실은 연간 \$3,000 한도 내에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부터 공제(상계)할 수 있다.

아. 자본손실의 이월

개인납세자에게 순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기순자본손실이 장기순자본이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음연도 이후에 단기자본손실이 되고, 장기순자본손실이 단기순자본이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음연도 이후에 장기자본손실이 된다. 이러한 초과분을 계산함에 있어 ① 자본손실의 한도액(\$3,000), ② 조정된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중 적은 것을 단기자본이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기자본손실과 장기자본손실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상계(공제) 및 이월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단기자본손실을 단기자본이득으로부터, 장기자본손실은 장기자본이득으로부터 각각 공제한다. 그런 다음 단기순자본손실이 발생하면 단기순자본손실을 장기순자본이득으로부터 공제한다. 마찬가지로 장기순자본손실이 발생하면 장기순자본손실을 단기순자본이득으로부터 공제한다.

- ② 단기순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단기순자본손실은 먼저 일반소득으로부터 상계(공제)된다.
- ③ 일반소득에서 상계(공제)하고도 남는 손실은 다음 연도 이후로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고, 이월된 자본손실은 장기 또는 단기의 속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월된 연도에 새로 발생한 것처럼 취급된다.

예를 들어 갑은 \$75,000의 봉급과 주식판매로 인한 장기자본이익이 \$5,000, 단기자본이익이 \$1,000, 주식판매로 인한 장기자본손실이 \$8,000라고 하자.

이 경우에 갑의 총소득(gross income)은 \$81,000(\$75,000+ \$5,000+ \$1,000)이다. 장기순자본손실은 \$3,000(장기자본손실 \$8,000-장기자본이익 \$5,000)이고, 단기순자본이익은 \$1,000(단기자본이익 \$1,000-단기자본손실 \$0)이므로 상계(공제)하고 남는 손실은 \$2,000이다. 이것은 공제한도 \$3,000보다 적으므로 전액 일반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을은 \$75,000의 봉급과 주식판매로 인한 장기자본이익이 \$5,000, 단기자본이익이 \$1,000, 주식판매로 인한 장기자본손실이 \$8,000, 다른 투자재산의 판매로부터 생긴 단기자본손실이 \$3,000이라고 하자.

이 경우 을의 총소득은 \$81,000이다. 공제한도 \$3,000은 단기자본이익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단기자본이익은 \$4,000이 되고, 따라서 단기순자본이익은 \$1,000(단기자본손실 \$3,000-단기자본이익 \$4,000)이 된다. 그리고 장기순자본손실은 \$3,000(장기자본손실 \$8,000-장기자본이익 \$5,000)이 된다. 따라서 을은 단기순자본이익 \$1,000과 장기순자본손실 \$3,000을 보유하게 되고 상계되고 남은 장기순자본손실 \$2,000이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의 경우와 달리 자본손실은 자본이익과만 공제할 수 있다.

자.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정의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에 의하면 자본자산이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과세연도말에 납세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재고 또는 그 밖의 자산, 또는 납세자의 통상의 영업과정에 의해 고객에게 판매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산(재고자산)
- 사업용도에 제공된 자산 중 세법상의 감각상각비공제의 대상이 되는 성질을 가진 재산 또는 부동산(사업용 고정자산)
- 저작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중 그 권리를 창작했던 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
- 통상의 영업과정(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취득한 수취채권(외상매출금)
- 정가로 구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취득된 의회기록을 포함한 연방정부간행물

차. 납세자번호(taxpayer identifying number) 등

이자 및 배당, 주식양도 등의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고객의 양도대금과 납세자번호(taxpayer identifying number)를 기재한 법정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납세자번호는 개인의 경우 social security account number, 기업의 경우 employer ID number를 부여받는다.

투자자는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할 때 또는 이자 및 배당을 받을 때에 납세자번호를 신고하고, 증권회사는 고객의 납세번호를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뒤 국세청에 거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증권거래세

미국에서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않고 있다.

IV. 영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영국의 소득세 제도 개관

가. 구분과세제도(Schedular system)

영국에서 개인은 한 회계연도(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법령 규정에 따라 각각의 소득에 대해 특별한 규칙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분과세제도(Schedular system)을 사용한다. 구분과세제도 하에서 소득의 종류는 크게 A부터 F까지 구분하다. A항목은 토지와 건물로부터 얻는 임대소득, B항목은 사업성 산림소득, C항목은 영국정부나 외국정부로부터 얻는 소득을 포함하고, D항목은 자영업자 소득과 사업소득을 포괄하여 6개로 분류된다. E항목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포함하며, F항목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표 IV-1〉 영국의 구분과세 제도(Schedular system)

| Schedule | 소득의 종류 | 비고 |
|------------|---|----|
| Schedule A | • 토지와 건물로부터 얻는 임대소득 | |
| Schedule B | • 사업성 산림소득 | 폐지 |
| Schedule C | • 영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공채로부터 얻는 소득 | 폐지 |
| Schedule D | | |
| Case I | • 상업수익(trade profits) | |
| Case II | • 전문직 또는 사업수익(profits of a profession or a vocation) | |
| Case III | • 이자 또는 연금소득(interest, annuities and other annual payments) | |
| Case IV | • 해외 유가증권 소득(foreign securities) | |
| Case V | • 기타 해외 재산소득(income from foreign possessions) | |
| Case VI | • 다른 스케줄하에서 과세할 수 없는 소득 | |
| Schedule E | | |
| Case I | • 근로소득 | |
| Case II | • 영국거주자와 통상거주자 | |
| Case III | • 영국비거주자, 통상거주자가 아닌 자 | |
| | • 영국외에서 소득을 얻은 영국거주자의 소득, 영국으로 송금되는 소득,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 Schedule F | • 영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 |

나. 세율 및 세액의 계산

영국의 소득세법은 저축소득, 비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동일범주 내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뒤 이들에 대해 각각 누진과세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세액을 구하는 일종의 분리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소득세의 종합소득세율은 비저축소득의 경우에는 10%, 22%, 40%의, 저축소득(자본소득 포함)의 경우에는 10%, 20%, 40%의 누진구조로, 배당소득의 경우 10%, 32.5%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표 IV-2〉 영국의 소득세율(2005/2006)

| 세율구간 | 금액(£) | 세율(%) | | |
|----------------------------------|--------------|-------|------|------|
| | | 비저축소득 | 저축소득 | 배당소득 |
| Starting rate (or lower rate) | 0~2,090 | 10 | 10 | 10 |
| Basic rate | 2,091~32,400 | 22 | 20 | 10 |
| Higher rate | 32,400 초과 | 40 | 40 | 32.5 |

자료: <http://www.ifa.org.uk/tax2005/income.html>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저축소득을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저축소득,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비용과 인적공제는 비저축소득의 총액에서 먼저 빼고, 그리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 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순으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할 때는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이 해당되는 세율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각종 비용과 공제액이 없으며, 근로소득(비저축소득) £30,000, 이자소득(저축소득) £4,000, 배당소득이 £5,000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3〉 과세소득 및 적용세율

(단위: £)

| 소득의 구성 | 과세소득 | 적용세율에 따른 소득구분 | 세율구간 | 적용세율 | 세액 |
|-----------------|--------|------------------|------------------|------------|-------|
| 배당소득 | 5,000 | 5,000 | higher rate | 32.5% | 1,615 |
| 저축소득 (이자소득) | 4,000 | 1,600 | | 40% | 640 |
| | | | 2,400 | basic rate | 22% |
| 비저축소득 (근로소득) | 30,000 | 27,910 | (2,091 ~ 32,400) | 20% | 5,582 |
| | | 2,090 | starting rate | 10% | 209 |

세액계산과정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Proforma | 금 액 | | |
|---|-----|--------------|--------------|
| earned income | | | |
| Source P less expenses | 000 | | |
| Source Q less expenses | 000 | | |
| | | 000 | |
| Less : pension contributions | | (000) | |
| | | | 000 |
| Unearned/investment income | | | |
| Source R | | 000 | |
| Source S | | 000 | |
| | | 000 | |
| Less charges on income | | (000) | |
| | | | 000 or (000) |
| Statutory total income | | 000 | |
| Less : vocational training relief(VTR) | | (000) | |
| | | | 000 |
| Less : personal reliefs(except as below) | | | (000) |
| taxable income | | 000 | |
| Tax at 20%, 22%, 40% thereon | | 000 | |
| Less : basic rate on charges and on VTR (where relief at source) | 000 | | |
| excess liability adjustment (including basic rate deemed paid) | | 000 or (000) | |
| | | | 000 or (000) |
| | | | 000 |
| Less : income tax reductions(in order) | | | |
| (1)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 000 | |
| (2) mortgage interest(non-MIRAS) | | 000 | |
| (3) qualifying maintenance | | 000 | |
| (4) personal reliefs, e.g.. : | | 000 | |
| (a) additional personal allowance | 000 | | |
| (b) widow's bereavement allowance | 000 | | |
| (c) married couple's allowance | - | | |
| | | | (000) |
| Tax liability | | | 000 |
| Less : tax borne | | | (000) |
| Tax due | | | 000 |

2.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이자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되며, 세율구간에 따라 10%, 22%,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후 순차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들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및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과세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리과세라고 할 수 있다.

나. 비과세

이자소득 중 우체국 취급 재정증권(gift bought on national savings stock register)이나 10,000파운드까지의 정부발행 국민저축채권 이자 및 국민저축은행에 예치된 연간 70파운드까지의 이자는 비과세된다.

3.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배당소득은 세율구간에 따라 10%, 3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starting rate 구간과 basic rate 구간에 대하여는 10%, higher rate 구간에 대하여는 3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후 순차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득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비저축소득, 저축소

득 및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과세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리과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소득 중 비과세 대상은 없다.

나. 예납법인세제도의 폐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종전에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예납법인세(ACT: advance corporation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1999년 4월 6일 예납법인세 제도가 폐지되었다.

다. 이중과세 조정 : 부분조정제도(partial imputation system) 도입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던 완전한 법인세 주주귀속법(imputation method) 폐지하고 1999년 4월 6일부터 배당세액공제율(gross-up율)을 배당금의 1/9로 축소하였다. 부분조정제도는 법인단계에서는 배당분과 유보분을 구별하지 않고 과세하는 대신 개인단계에서는 수입배당액에 수입배당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수입배당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배당세액공제율(gross-up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993. 4. 5. 이전 : 25/75
- 1993. 4. 6. ~ 1994. 4. 5. : 22.5/77.5
- 1994. 4. 6. ~ 1999. 4. 5. : 20/80
- 1999. 4. 6. ~ 현재 : 10/90

라. 기업간의 배당

배당을 받은 법인이 다른 영국내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관련된 세액 공제액을 합한 소득인 면제투자소득(franded investment income : FII)은 익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이 영국내 소재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과세되며 이중과세 조정을 목적으로 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자본이득

가. 자본이득의 과세방법

자본이득은 세율구간에 따라 10%, 22%,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후 순차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들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및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과세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리과세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자본이득은 저축소득의 맨 윗부분으로서 과세(taxed as top slice of savings income)된다.

나.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본이득과 통산할 수 있으나, 기타 다른 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으며, 통산하고도 남는 손실은 다음연도 이후로 무제한 이월이 가능하다.

다. 연간소득공제(annual exemption) : 한도 8,500파운드(2005~6년 기준)

자본이득에서 연간 8,500파운드까지 소득공제하여 비과세하고, 8,500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율구간에 따라 장·단기 구분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라.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tapering relief system)

tapering relief system은 자본이득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1998년 4월 6일 이후부터 실시되고 있다. 자본이득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1982년 4월 6일 이후부터 양도자산 계산시에 물가상승공제(indexation allowance)를 허용하였다가 1998년에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물가상승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제도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1998년 4월 5일까지는 그 전까지 발생한 인플레이션 이득은 물가상승공제를 적용하여 공제하며,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공제비율은 사업용 자산이득인가 아니면 비사업용 자산이득인가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주식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5%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가 사업용에 해당하고, 사업용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최고 75% 공제하며 비사업용 자산이득의 경우에는 40% 공제한다. 이 공제방법은 자본손실과의 통산 후에, 그리고 연간소득공제 전에 적용된다.

〈표 IV-4〉 비사업용 자산

| 1998.4. 5. 이후의 자산의 보유기간 ¹⁾ | 과세범위 |
|---------------------------------------|------|
| 1년 | 100% |
| 2년 | 100% |
| 3년 | 95% |
| 4년 | 90% |
| 5년 | 85% |
| 6년 | 80% |
| 7년 | 75% |
| 8년 | 70% |
| 9년 | 65% |
| 10년 이상 | 60% |

주: 1) 1998년 3월 16일에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에 1년을 추가하여 적용하며, 1998년 4월 5일까지는 물가상승공제(indexation allowance)에 의해 세액산출
 자료: <http://www.ifa.org.uk/tax2005/cgt.html>

〈표 IV-5〉 사업용 자산

| 1998.4. 5. 이후의 자산의 보유기간 | 2002. 4. 5.이후의 처분 과세범위 |
|-------------------------|------------------------|
| 0년 | 100% |
| 1년 | 50% |
| 2년 이상 | 25% |

자료: <http://www.ifa.org.uk/tax2005/cgt.html>

마. 납세자번호제도

영국에서는 납세자번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5. 증권거래세

영국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V. 독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독일의 소득세 제도 개관

가. 소득의 유형 및 개념

독일의 소득세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① 농업 및 산림업 소득, ② 사업소득, ③ 독립적 활동소득, ④ 비독립적 활동소득, ⑤ 자본수익, ⑥ 임대소득, ⑦ 기타소득 등 7가지 유형의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①~③에 해당하는 소득 유형에서의 소득금액은 이익(Gewinneinkuenfte)라고 하고, ④~⑦에 해당하는 소득유형에서의 소득금액을 잉여수입(Uberschusseinkuenfte)이라고 한다.

나. 과세소득 산정방법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1~7호의 각 소득유형들의 소득금액의 합계

△ 연령경감금액

△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공제

총소득금액

△ 특별지출

△ 비경상적 부담

△ 자가주택에 대한 차감

△ 과세연도간 손실공제

소득

△ 자녀소득공제

△ 가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공제

과세소득

다. 소득세율

모든 소득을 원칙적으로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독일 소득세제에서 개인의 소득 (X)이 주어질 경우 소득세 부담은 다음과 같다.

$$Y = (X - 7664)/10000, \quad Z = (X - 12739)/10000$$

1. $Tax = 0$, for $X \leq 7664$
2. $Tax = (883.74Y + 1500)Y$, for $7665 \leq X \leq 12739$
3. $Tax = (228.74Z + 2397)Z + 989$, for $12740 \leq X \leq 52151$
4. $Tax = 0.42X - 7914$, for $52152 \leq X$

〈표 V-1〉 독일의 소득세율(single taxpayers, 2005)

| 연간 소득금액(EUR) | 한계세율(%) | 세액(EUR) |
|-----------------|---------------|--------------|
| 0 ~ 7,664 | 0 | 0 |
| 7,665 ~ 12,739 | 15.00 ~ 23.97 | 0 ~ 988 |
| 12,740 ~ 52,151 | 23.97 ~ 42 | 989 ~ 13,989 |
| 52,151 초과 | 42 | 13,990 |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p. 258

〈표 V-2〉 독일의 소득세율(jointly assessed spouses, 2005)

| 연간 소득금액(EUR) | 한계세율(%) | 세액(EUR) |
|------------------|---------------|----------------|
| 0 ~ 15,329 | 0 | 0 |
| 15,330 ~ 25,479 | 15.00 ~ 23.97 | 0 ~ 1,976 |
| 25,480 ~ 104,303 | 23.97 ~ 42 | 1,978 ~ 27,978 |
| 104,303 초과 | 42 | 27,980 |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p. 258

2. 이자소득

가.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원천징수는 1989. 1. 1 실시, 1989. 6. 30 폐지, 1993. 1. 1 재시행)되며, 예금이자의 경우 30%, 채권이자의 경우 25%의 세율로 각각 원천징수된다. 그런데 원천징수액의 5.5%를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로 부과하므로 예금이자의 경우 실제로 31.65% $\{30\% \times (1+5.5\%)\}$ 가 원천징수되고, 채권이자의 경우는 실제로 26.38% $\{25\% \times (1+5.5\%)\}$ 가 원천징수된다. 그리고 비실명장의 예금이자(anonymous over-the-counter banking)는 35%의 세율로 원천징수, 실제로는 36.93% $\{25\% \times (1+5.5\%)\}$ 가 원천징수된다.

나. 공제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년에 1,370유로까지 공제(allowance)가 가능(double for jointly assessed spouse)하고, 51유로의 lump-sum deduction이 가능하다.

3. 배당소득

가.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 배당금의 20%(종전에는 25%)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 대상은 수입배당금의 절반(1/2)이 아니라 전체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액은 향후 개인납세자의 연말정산시에 모두 세액공제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액의 5.5%를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로 부과하므로 실제로는 21.1% $\{20\% \times (1+5.5\%)\}$ 가 원천징수된다.

나. 공제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년에 1,370유로까지 공제(allowance)가 가능(double for jointly assessed spouse)하고, 51유로의 lump-sum deduction이 가능하다.

다. 이중과세조정제도

독일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1977년부터 완전한 법인세 주주귀속법(임퓨테이션 방식)을 도입하였고, 2000년까지는 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40%,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를 각각 과세하였다. 그 후 2001. 1. 1부터는 배당소득과 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면서 임퓨테이션 방식을 폐지하고 반액법(절반소득과세제도 : half-income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 1. 1부터 법인세 주주귀속법 대신에 배당수입금액의 50%만을 과세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고, 과세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배당수입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누진유보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누진유보제도(Progressionvorbehalt : reservation of progression)란 어느 특정 개인에게 비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소득이 비과세 혜택은 누리게 해주더라도 이 소득이 제외됨에 따라 누진적 소득세율하에서 당해 개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조차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혜택은 주지 않기 위하여 적용소득 세율산정에서만 비과세소득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이다.

반액법(절반소득과세제도)에 의하면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불필요하게 되고, 법인세 환급이나 추가적인 부과제도도 불필요하게 된다.

라. 법인간의 배당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최소지분보유비율의 제한은 없다.

4. 자본이득

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privately held assets)

개인적 거래(private transaction)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으나, 자본이득의 합계가 과세기간 동안 최소한 512유로이고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과세된다.

- 부동산(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동산(주식과 채권을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계약기간이 1년 또는 그 이하인 파생상품 거래
- 자산의 구입 이전에 행한 처분한 경우

또한 부동산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이 그 부동산이 특정기간 동안 개인적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사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어느 시점에서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과세된다.

나. 영업용 자산(business assets)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일반영업소득(ordinary business income)으로 취급된다.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rollover relief 한도가 500,000 유로이고, relief는 자본이득이 실현된 후에 취득하거나 제조된 적격대체자산(qualifying replacement assets)의 취득원가나 제조원가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적격대체자산(qualifying replacement assets)은 주식과 감각상각대상인 동산 및 다음 2년 또는 4년 이내에 취득한 건물을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이득이 실현된 과세기간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제조하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설정하고 그 적립금을 최대 4년동안 유지할 수 있다.

다.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통산하며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이 가능하다. 투기적 매매에 따른 손실은 당해 연도 투기매매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이 가능하다. 영업용자산의 양도 및 대규모 거래에 의한 양도손실은 기타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이 가능하다.

5. 증권거래세

독일은 1999년 10월 1일자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다.

Ⅵ. 일본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일본의 소득세 제도 개관

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일본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10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 ① 이자소득은 공사채 및 예저금의 이자와 합동운용신탁, 공사채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의 이익의 분배를 말한다.
- ② 배당소득은 법인(공익법인 등 및 인격이 없는 법인을 제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중간배당을 포함) 및 잉여금의 분배, 기금이자와 공사채투자운용신탁 및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신탁, 특정목적 수익의 분배를 말한다.
- ③ 부동산소득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의 임대, 부동산상의 권리의 임대, 선박과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 ④ 사업소득은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금융업, 운수업, 수리업, 서비스업 등 이외에 의사, 변호사, 작가, 배우, 프로야구선수, 외교원 등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 ⑤ 급여소득은 봉급, 급여, 임금, 세비, 상여와 이러한 것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급여를 말한다.
- ⑥ 퇴직소득은 퇴직시, 과거 근무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퇴직일시금, 퇴직은급 등과 이러한 것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급여를 말한다.
- ⑦ 산림소득은 산림을 벌채해서 양도, 입목 그대로 양도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 ⑧ 양도소득은 자산(재고자산과 이것에 준하는 자산, 영리를 목적으로서 계속적으로 양도되는 자산 및 산림을 제외)의 양도에 의한 소득을 말한다. 장기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1/2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 ⑨ 일시소득은 이자소득부터 양도소득까지의 8종류의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노무 기타 역무 또는 양도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일시의 소득을 말한다. 일시소득에 대해서는 1/2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 ⑩ 잡소득은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무원 공제연금, 은급 등의 공적연금 이외에 원고료, 강연료, 인세, 방송출연료, 대금의 이자, 우편연금과 생명보험연금, 할인채와 이부채의 상환차익 등 다른 소득에 적합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나. 소득세의 과세방식

일본의 소득세의 과세방식은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으로 구분되고, 분리과세방식은 다시 신고분리과세방식, 원천분리과세방식으로, 다시 원천분리과세방식은 일률원천분리과세방식과 원천분리선택과세방식으로 구분되지만, 원천분리선택과세방식은 폐지되었다.

1) 종합과세 - 원칙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귀속하는 소득을 10종류로 분류한 후에 이것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적인 과세방식으로 하고 있다.

2) 신고분리과세

확정신고에 있어서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그 위에 소득세액을 계산해서 납세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분리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퇴직소득, 산림소득, 토지·건물·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 선물거래와 관계되는 잡소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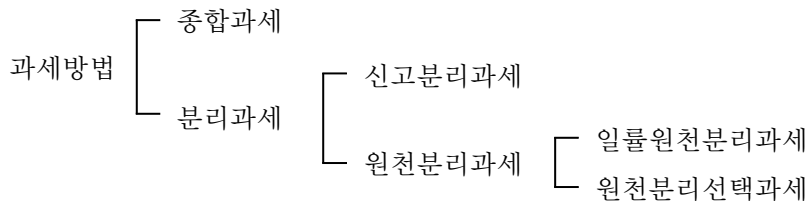
3) 일률원천분리과세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률적으로 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신고는 불가). 일률원천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① 예·저금과 공사채의 이자, 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 등의 이자소득, ② 금융유사상품의 수익 등, ③ 할인채의 상환차익 등이 있고, 할인채의 상환차익을 제외하고 소득세는 일률 15%(할인채의 상환차익은 18%)의 세율로 과세된다.

4) 원천분리선택과세

납세자가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신고도 가). 일정한 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분리과세로서의 효과가 생기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쪽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원천징수세액이 환부되는 경우 등)에는 종합신고 또는 신고분리과세가 된다.

[그림 VI-1] 과세방법



출처: 池本征男, 『소득세법』, 세무경리협회, 평성17년, p. 17

2.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는 ① 공사채의 이자, ② 예·저금의 이자, ③ 합동운용신탁의 수익분배, ④ 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분배, ⑤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의 수익분배 등이 있고, 조세특별조치법상의 이자소득에는 ①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인 생명보험계약 등에 관한 차익, ② 근로자재산형성연금저축계약인 생명보험계약 등에 관한 차익, ③ 근로자재산형성주택저축계약인 생명보험계약 등에 관한 차익 등이 있다.

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이자소득은 세율 15%(주민세 5% 별도)로 일률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금액이 수입금액이 된다.

다. 비과세

이자소득 중 비과세되는 것에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과 일정한 절차를 요하는 것이 있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고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는 ① 연리 1%를 초과하지 않는 당좌예금의 이자, ② 소위 어린이은행의 예·저금의 이자, ③ 납세준비예금의 이자(단 납세목적 외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인출이 있었던 날을 포함하는 이자의 계산기간에 관계되는 이자는 과세), ④ 납세저축조합예금의 이자(단 원본 10만엔을 초과해서 납세목적 외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인출이 있었던 날을 포함하는 이자의 계산기간에 관계되는 이자는 과세) 등이 있고, 비과세되기 위하여 일정절차를 요하는 것에는 ⑤ 노인 등의 우편저금이자(한도액 350만엔), ⑥ 노인 등의 소액예금이자(한도액 350만엔), ⑦ 노인 등의 소액공채이자(한도액 350만엔), ⑧ 근로자재산형성주택저축이자(한도액 550만엔), ⑨ 근로자재산형성

연금저축이자(한도액 550만엔) 등이 있다. 여기서 노인대상비과세제도는 2006년 1월 이후 폐지되고, 장애인 등과 관련된 비과세제도로 정비된다.

3.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개념

배당소득은 법인(공익법인등 및 인격이 없는 법인을 제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중간배당을 포함) 및 잉여금의 분배, 기금이자와 공사채투자운용신탁 및 공모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신탁, 특정목적 수익의 분배를 말한다.

나. 수입금액의 계산

배당소득의 금액은 이자소득과 달리 연중의 배당 등의 수입금액에서 원본인 주식 등의 취득에 요한 부채의 이자를 공제해서 계산한다.

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에는 배당소득은 20%의 세율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한 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개인 대주주를 제외)과 공모증권투자신탁의 수익배분은 10%(개인소득세 7%와 주민세 3%)를 원천징수하고, 2008년 4월 이후부터는 20%(소득세 15%, 주민세 5%)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원천분리선택과세와 소액배당의 신고불요제도가 존재하지만, 2003년 4월 1일 이후에 지불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분리선택과세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VI-1〉 일본의 배당소득제도

| | | 2004. 1. ~ 2008. 3. | 2008. 4. ~ |
|---------------------------------------|----------|---------------------------|--------------------------|
| 원 칙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 (개인 대주주)] | | 종합과세 | |
| | 원천징수세율 | 20% | |
| | 확정신고불요제도 | 1주당 1회 5만엔(연 1회 10만엔)이하 | |
|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개인 대주주를 제외) | | 종합과세 | |
| | 원천징수세율 | 10% (개인소득세 7%, 주민세 3%) | 20% (소득세 15%, 주민세 5%) |
| | 확정신고불요제도 | 상한없이 적용 | |
| 공모증권투자신 탁의 수익배분 | | 종합과세 | |
| | 원천징수세율 | 10% (개인소득세 7%, 주민세 3%) | 20% (소득세 15%, 주민세 5%) |
| | 확정신고불요제도 | 상한없이 적용 | |

주: 1. 상장주식 등의 배당(대주주이외)이라는 것은 그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발행된 주식총수의 5% 미만인 자가 지분받는 배당을 말한다.

2. 상장주식 등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 장외등록종목으로서 등록된 주식, 장외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 장외관리종목주식, 증권업협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종목으로서 증권업협회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등록된 일본은행출자증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 매매되고 있는 주식 등을 말한다.

자료: 小田嶋清治, 『평성 16년판 도해 원천징수세』, 재단법인 대장재무협회, p. 228.

池本征男, 『소득세법』, 세무경리협회, 평성17년, pp. 42~44.

라. 배당공제

배당공제란 납세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중간배당을 포함), 잉여금의 분배, 증권투자신탁 또는 특정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 또는 특정목적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계되는 배당소득(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제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자의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표 VI-2〉 일본의 배당공제제도

| 기준금액 | 산출식 |
|--|---|
| ① 과세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 | $A \times 10\% + B \times 5\%$ |
| ② 과세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고 동시에 과세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특정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계되는 배당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 | $A \times 10\% + b \times 2.5\% + (B - b) \times 5\%$ |
| ③ 과세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특정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계되는 배당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④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 $a \times 5\% + (A - a) \times 10\% + B \times 2.5\%$ |
| ④ 과세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②이익의 배당 등에 관계되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③특정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계되는 배당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A \times 5\% + B \times 2.5\%$ |

- 주: 1. A = 이익의 배당·잉여금의 분배, 특정투자신탁(ETF)의 수익의 분배 및 특정목적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계되는 배당소득
 B = 특정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계되는 배당소득
 a : A 중에서 {과세총소득금액-(1,000만엔+B)}에 해당하는 금액
 b : B 중에서 과세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1,000만엔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정증권투자신탁이란 공사채투자신탁 및 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 이외의 증권투자신탁(특정주식투자신탁 ETF를 제외) 중 특정외화건 등 증권투자신탁 이외의 것을 말한다.
3. 과세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란 과세총소득금액, 분리과세의 과세장기(단기) 양도소득금액, 주식 등에 관계되는 과세양도소득 등의 금액 및 선물거래에 관계되는 과세잡소득 등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자본이득(주식 양도차익)

〈표 VI-3〉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 | | 2004. 1. ~ 2007. 12. | 2008. 1. ~ |
|-------|--------|---------------------------|-------------------------|
| 상장주식등 | | 신고분리과세 | |
| | 원천징수세율 | 10% (개인소득세 7%, 주민세 3%) | 20%(소득세 15%, 주민세 5%) |
| 비상장주식 | | 신고분리과세 | |
| | 원천징수세율 | 10% (개인소득세 7%, 주민세 3%) | 20%(소득세 15%, 주민세 5%) |

주: 1. 상장주식 등의 배당(대주주이외)이라는 것은 그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발행된 주식총수의 5% 미만인 자가 지불받는 배당을 말한다.

2. 상장주식 등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 장외등록종목으로서 등록된 주식, 장외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 장외관리종목주식, 증권업협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종목으로서 증권업협회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등록된 일본은행출자증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 매매되고 있는 주식 등을 말한다.

자료: 池本征男, 『소득세법』, 세무경리협회, 평성17년, p. 42~44.

VII. 핀란드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핀란드의 소득세 제도 개관

가. 소득세 관련 법령

The Income Tax Act(1992)은 모든 유형의 소득세를 다루는 일반법이고, The Act on the Taxation of Farm Income(1967)은 농업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The Act on the Taxation of Business Profits and Income from Professional Activities(1968)은 사업소득과 전문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State Income Taxes(국가소득세)

국가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 및 사자의 유산에 대하여 부과된다. 과세체계는 근로소득의 경우 누진과세되는 반면 투자소득 즉, 자본소득의 경우에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이중과세제도(Dual Income Tax)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근로소득은 매년 국회에 의해 결정된 누진세 체계에 따라 부과되고, 2005년도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VII-1〉 근로소득세율(2005)

(단위: 유로)

| taxable income | basic tax amount | rate within brackets(%) |
|-----------------|------------------|-------------------------|
| 12,000 ~ 15,400 | 8 | 10.5 |
| 15,400 ~ 20,500 | 365 | 15.0 |
| 20,500 ~ 32,100 | 1,130 | 20.5 |
| 32,100 ~ 56,900 | 3,508 | 26.5 |
| 56,900 ~ | 10,080 | 33.5 |

자료: Ministry of Finance, *Taxtion in Finland*, 2005. 3, p. 17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한 국가소득세는 28%의 단일세율(flat rate)로 부과된다.

다. 시소득세(communal tax or municipal income tax)

시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자의 유산에 대해 단일세율로 부과된다. 각 시의회(municipal council)은 시예산을 기초로 해서 매년 다음 해에 적용될 세율을 미리 결정한다. 2005년에 세율이 16%에서 21%까지 다양하며 평균은 18.30%이다.

라. Church tax(교회세)

Evangelical Lutheran Church 또는 Orthodox Church의 구성원인 개인은 교회세(church tax)를 납부한다. 이러한 교회의 지역공동체는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자의 유산에 대해 교회세를 부과한다. 교회세는 단일세율로 부과되고, 지역 교회의회(local ecclesiastical council)에 의해 매년 미리 다음 해에 적용될 세율이 결정되는데 1%와 2.5%의 범위 안에 걸쳐 있다. 2005년에 평균세율은 1.32%였다. 교회세는 시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소득에 부과된다.

마. 최대결합세율(maximum combined rate of tax)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한 국가소득세, 국가자본세(state capital tax), 시소득세, 교회세, 건강보험기여금의 총합계가 과세가능한 근로소득 및 투자소득의 60%를 초과한다면 지불가능한 세액은 60%로 축소된다. 국가소득세액이 먼저 감소되고, 그 다음에 국가자본세가 감소된다. 최대세율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세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은 완전히 과세된다.

2.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의 정의

투자소득은 자본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및 자산에 의해 산출된 다른 소득으로 정의된다. 소득세법은 이자와 임대소득, 배당소득, 산림소득, 투자펀드로부터 발생한 분배액, 특허 또는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토양에서 채취된 물질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소득, 과세연도 말의 금전대부공모(money loan outstanding) 등을 투자소득의 예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모두 투자소득에 포함된다.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한 국가소득세는 28%의 단일세율(flat rate)로 부과된다.

나.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투자소득이지만, 만약 이자소득에 확정세액(final tax)인 원천징수세(28%)가 부과된다면 이자소득은 투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은행예금과 공공기관에 기부된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28%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투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 배당소득

1) 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주주의 경우 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중 70%는 투자소득으로서 28%의 세율로 과세되고, 나머지 30%는 과세면제된다. 2005년 1월부터는 배당액 중 57%는 투자소득으로서 28%의 세율로 과세되고, 나머지 43%는 과세면제된다.

2) 비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비상장회사 주식가치의 9%가 연수익으로 산출된다. 배당은 산출된 연수익 중 90,000유로까지는 과세면제된다. 90,000유로를 초과하는 배당액에 대해서는 70/30% 규칙에 따라 과세된다. 배당액의 70%는 투자소득으로 28%의 세율로 과세되고, 나머지 30%는 과세면제된다. 또한 9% 수익을 초과하는 양은 70/30%규칙에 의해 과세되지만, 70%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수입배당액 10,000유로이고, 산출된 수익이 6,000유로인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경우 a) 6,000유로는 과세면제되고, b) 4,000유로의 70%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c) 4,000유로의 30%는 과세면제된다.

〈표 VII-2〉 배당과세 - 사례 1

(단위: 유로)

| 수입배당금 (10,000) | 산출된 수익 (6,000) | 비율 | 과세여부 |
|-------------------|-------------------|------|----------------|
| 4,000 | | 70% | 근로소득으로 과세(누진세) |
| | | 30% | 과세면제 |
| 6,000 | 6,000 | 100% | 과세면제 |

또 다른 예로 수입배당액이 140,000유로이고, 산출된 수익이 100,000유로인 경우를 보자. 이 경우 a) 90,000유로는 과세면제되고, b) (100,000-90,000)의 70%(7,000유로)는 투자소득으로 28%의 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c) (100,000-90,000)의 30%(3,000유로)는 과세면제되고, d) 40,000의 70%(28,000유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e) 40,000의 30%(12,000유로)은 과세면제된다.

〈표 VII-3〉 배당과세 - 사례 2

(단위: 유로)

| 수입배당금 (140,000) | 산출된 수익 (100,000) | 비율 | 과세여부 |
|--------------------|---------------------|------|----------------|
| 40,000 | | 70% | 근로소득으로 과세(누진세) |
| | | 30% | 과세면제 |
| 10,000 | 10,000 | 70% | 투자소득으로 과세(28%) |
| | | 30% | 과세면제 |
| 90,000 | 90,000 | 100% | 과세면제 |

2005년 1월부터는 배당액 중 57%는 투자소득으로서 28%의 세율로 과세되고, 나머지 43%는 과세면제된다.

3) 다른 유사한 소득

위와 같은 원칙은 협동조합의 참가자본(participation capital)에 대한 이자, 저축은행의 기본적립금(basic reserve)에 대한 수익, 저축은행의 잉여적립금(additional reserve) 투자에 대한 이자, 상호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의 보증자본(guarantee capital)에 대한 이자 등에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위와 같은 소득이 1과세연도에 1,500유로를 초과하면 그러한 소득의 70%는 과세된다.

라. 자본이득(capital gain)

자본이득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투자소득으로 간주된다. 과세가능한 자본이득은 판매가격에서 판매비용과 취득가액을 공제함으로써 계산된다. 최소공제액(minimum deduction)은 판매가격의 20%가 된다. 재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최소공제액은 40%가 된다. 자본이득은 다음의 경우에 과세면제된다.

- 개인납세자가 농업용이나 산림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일반 또는 제한 파트너십(general or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또는 회사의 소유권에 대하여 최소한 10%의 권리를 주는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개인납세자 또는 금융 대가 없이 개인납세자에게 재산을 준 자와 개인납세자에 의해 10년 이상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주식
- 수령인인 가까운 친족(close relative)인 경우

가까운 친족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된다. 교환성 있는 약속어음을 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주식 간의 교환은 자사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규격화된 선물계약(standardized forward contract)로부터 발생한 이득은 자본이득으로 취급되고, 관련 손실은 공제된다.

자본손실(capital loss)은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 동안에 걸쳐서 자본이득과만 상계될 수 있다.

VIII. 요약 및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자본이득은 장단기를 구분하여 단기자본이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장기자본이득의 경우에는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의 맨 아래쪽(zero)에 비저축소득, 그 다음이 저축소득(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 가장 위쪽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이 포함된 세율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위 세 가지의 소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에 저축소득과 배당소득은 비저축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구간에 속하게 된다. 즉, 위 세 가지의 소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저축소득과 배당소득은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비저축소득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되고 있으며, 자본이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적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본이득이 동산(주식과 채권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고 512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된다.

일본의 경우 이자소득은 일률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이득(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신고분리과세되고 있다.

핀란드는 이중과세제도(Dual Income Tax)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근로소득(즉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누진과세 체계를 통해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투자소득의 경우에는 단일세율로 과세하여 과세

기반을 보호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어느 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최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개선할 때 각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참고할 수 있지만, 각국이 위와 같은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시행하게 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 김문현·김란영,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2. 2.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 김진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 김진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2.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 배상덕,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2.
- 안종석·권오성,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 이인숙,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2.
- 임승혁,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 조장률, 『자본이득과세와 조세형평성 -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차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
- 稻垣光陵 編, 『圖解日本の 稅制』, 財經詳報社, 2002.
- 小田嶋清治, 『圖解 源泉所得稅』,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2004.
- 羽深成樹 編, 『日本の 稅制』, 財經詳報社, 2005.
- 伊藤公哉, 『あめりか聯邦稅法』, 中央經濟社, 2005.
- Burke, J. Martin & Michael K. Friel, "Understanding Federal Income

- Taxation,” LexisNexis, 2005.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 Ministry of Finance, *Taxation in Finland 2005*.

세법연구 06-07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2006년 11월 23일 인쇄

2006년 11월 30일 발행

저 자 전병목 · 이승식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6

ISBN 89-8191-329-3

* 잘못 만들어진 책을 바꾸어 드립니다.